

보도시점 2024. 9. 1.(일) 11:00  
9. 2.(월) 조간

배포 2024. 8. 30.(금) 16:00

##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 검역본부, 추석 명절 등 해외여행객 증가 시기 농축산물 검역 강화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축산물, 과일 등 농축산물 무단 반입금지
- 축산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대상 출입국 신고 등 방역 철저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 여행객이 꽃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잇,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액: 5,156억 이상, 식물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989억여 원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 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 '24년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 축산물(99.5%), 식물류(90.6%)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 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 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추석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 추진사항 및 관련 사진
- 2. 검역 대상물품 반입자제 광고 및 홍보 자료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54-912-0416)
		담당자	사무관	김병조 (054-912-0422)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책임자	과 장	방문진 (054-912-0601)
		담당자	주무관	이 현 (054-912-0825)



- (추진 기간) '24.8.26. ~ 10.31. (약 2개월)
- (국경검역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상별 맞춤형 홍보 병행
  - ① (홍보캠페인) 주요 공항만 12개소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8.26~9.19)
  - ② (동영상 홍보) <sup>1)</sup>KTX 부산역·대전역 국경검역 동영상 송출 광고(8.26~9.19)
    - <sup>2)</sup>서울역-인천공항 공항철도 동영상 송출 광고(8.26~9.19)
    - \* 해당 동영상은 사전제작 완료(30초 분량, 검역안내)
  - ③ (항공사) <sup>1)</sup>아시아나 국제선 수화물표 국경검역 광고(9.1~10.31)
    - <sup>2)</sup>해외 여행자 대상 축산물 불법 반입 금지 및 신고철저 홍보
    - \* 각 항공사별 기내 여행객 대상 홍보(농축산물 반입금지, 축산관계자 신고철저)
  - ④ (이주민·외국인근로자)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교육 홍보
    - 산업연수생 대상 다국어 동식물 국경검역 안내 리플릿 배부
  - ⑤ (축산관계자<sup>여권소지자</sup>) 출국신고자 대상 문자 메시지 홍보
    - 추석전(9.3~9.12): 축산관계자(23만명) 대상 순차 발송
    - \* 출국전: 출국신고후, 법무부 출국심사후 / 입국후: 법무부 입국심사후, 소독교육 실시후
- (불법 농축산물 감시) 휴대품 및 우편물·특송품 불법반입 방지
  - ① (휴대품) 위험노선: 검역 X-ray + 세관 합동 일체검사 + 검역탐지견
  - ② (우편물·특송품) 불합격품 정보 및 선별어 제공을 통한 검색 강화
  - ③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및 외국인 축산관계자 전량 개장검사



< 해외여행객 휴대품 일제검사 장면 >



< 국제 우편 검역탐지견 검색 장면 >

## 동·식물 검역안내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시 **육류,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과 망고, 라임과 같은 생과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여 공항,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한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가. 동물

나.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다.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

• 가축전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검역**

**반입 금지 품목**

- 반려동물 개, 고양이, 애완동물 등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 육류 및 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등
- 동물의 생산품 녹용, 뼈, 깃털 등
- 알 및 알가공품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

**식물검역**

**반입 금지 식물**

- 망고, 라임, 오렌지, 피망어, 사과, 고추, 풋콩 등 생과채류
- 감자, 고구마, 마, 껍데기가 붙은 호두
-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의 묘목·접수·심수
-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등

**검역신고 및 문의**

동·축산물 ☎ 1588-9060 / 식물 ☎ 054-912-0616

< 국제선 수화물표 뒷면 반입자제 광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양길, 한국여, 312

해외 가축 전염병 및 외래 병해충 유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KTX역사 및 열차 모니터 동영상 광고 송출 >